

포장재·제품의 제조·수입·판매 중단명령서

명령번호 제 호		
대상자	상호	법인등록번호
	대표자 성명	사업자등록번호
	주소	(전화번호:)
중단명령 내용	중단명령기간	
	포장재 재질·구조	
	제품명	

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9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장재·제품의 제조·수입·판매 중단을 명령합니다.

이 명령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에 따라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년 월 일
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직인